2018

19<sub>TH EDITION</sub>

**추록** 추가개정법령 반영

# 세법학I·II

# 정정운

◈ 발행일: 2018년 7월 6일

◈ 이 추록이 필요한 책 : [세법학 I·I] (정정운) 19판 1쇄

◈ 주요 내용 : 세법 추가 개정에 따른 19판 1쇄의 수정사항 등

• 「조세특례제한법」(2018.5.29. 개정)

NAVER 카페

세금과세법

검색

저자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책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taxnavi



#### 일러두기

- 1. 이 자료는 2018년 3월에 펴낸 세법학 Ⅰ · Ⅱ 제19판 <추록>입니다.
- 2. 이 자료에 반영된 일부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2018. 5. 29. 개정
- 3.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과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5.29.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이 자료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재 출간 후 몇 가지 개정사항들은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아니며, 이 자료는 수험목적상 중요한 사항만을 선별한 것입니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 정정운 著 -

#### 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 1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종 전	개 정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3년간 75%,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최저한세 적용함 ○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 기준 :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ul> <li>○ 감면비율 상향조정</li> <li>•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li> <li>: 5년간 100% 감면(최저한세 적용배제)</li> <li>○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 상향조정</li> <li>: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li> </ul>
	□ 감면대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추가 • <u>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u> 청년창업 중소기업 : <u>5년간 50% 감면</u>
□ 창업중소기업의 업종 범위 : 제조업 등 일정 업종	: (왼쪽과 같음) -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 <u>용 및 미용업</u> (해당 업종 추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기한 : 2018.12.31.	○ 적용기한 : 2021.12.31.(3년 연장)

【개정취지】① 청년의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②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8년 5월 29일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

종 전	개 정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기업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2021.12.31.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 ② 감면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 세액감면 :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2		4,800만원 이하일 것
(신 설)	 구 분	감면비율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한 창업중소기업	100% * 5년간 생계형 100% 감면 (최저한세 적용배제)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 기업	50% * 5년간 생계형 50% 감면

【개정취지】생계형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8년 5월 29일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 개 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sim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 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 (2) 감면대상기업의 범위

1) '창업중소기업'이란 <u>2021년 12월 31일</u> 이전에 제조업 등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한다(租特法 6 ①.③).

#### 참고사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租特法 6 ③).

- ①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 ②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연구개발 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③ 전문디자인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 ④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 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⑥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여기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租特法 6 ⑩).

-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의 총가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 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租特令 5 20)
  -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法令 47 ⑦)에 해 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예규판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 및 범위

본문 ①~④의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위 ① 사유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大法院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

- 2)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u>2021년 12월 31일까지</u>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그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의 업종과 같다.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벤처캐피털투자기업 · 기술우수평가기업
  - 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참고사항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의2).

-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2.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그 밖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케피털투자기업	다음 창투사 등의 주식인수금액이 자본금의 10%(벤처기업확인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유지)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벤처주식회사
② 연구개발투자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③ 기술우수평가기업	특허권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평가기관으
	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3)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을 말한다.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이란 다음의 고효율제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租特令 5 ⑩).
    -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②「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 (3) 세액감면의 내용

-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u>법인세 또는 소득세에</u>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租特法 6 ①).
  - \* 만일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을 기산한다.

	구 분	감면비율	비고
창업중소기업	① <u>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u> <u>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u>	<u>100%</u> <u>* 5년간 100% 감면</u>	* 이처럼 100% 감면 받은 과세연도의 경 우 최저한세를 배제 한다(租特法 132 ① (4), ②(4)).
	<ul> <li>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li> <li>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li> </ul>	50% * 5년간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시	·   업자*	<b>50%</b> * 5년간 50% 감면	_

\* 중소기업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내국인을 말한다.

#### 참고사항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적용례

- 1.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u>2021년 12월 31일 이전</u>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소득세법에 따른 <u>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u>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租特令 5 ①).
- ①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u>34세</u>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u>34세</u>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②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⑤ 위 ①의 요건을 갖출 것
  - ①「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 자)일 것
- 2.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위 ② · ⑥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5년간 100%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50% 세액감면을 적용한다(租特令 5 ②). 한편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위 ② · 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租特令 5 ③). ■
-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5년간 50% 감면). 다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租特法 6 ②).
  - \* 만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을 기산한다.
  - ①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취소일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②)」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 유효기간 만료일
- 3)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5년간 50% 감면). 다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는다(租特法 6 ④).

\* 만일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을 기산한다.

참고사항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租特令 5 個)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 참고사항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사유 발생시 감면배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는다(租特法 6 ①, 租特令 5 ②).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③ 실질적 독립성 요건(관계기업 매출액의 중소기업기준 요건은 제외)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4)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

(3)의 세액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②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③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3년간 75% 감면 → 2년간 50% 감면, 租特法 6 ⑤).

#### 참고사항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범위와 적용례

1.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성장서비스업 종' 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租特令 5 ⑪).

- 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 ②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③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④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⑤ 물류산업
- ⑥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 ⑦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서비스업
- 2.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3)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租特令 5 ⑫). ■

#### (5)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

(3)의 1)과 (4)의 세액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租特法 6 ⑥).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

구 분	감면비율	비고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100% * 5년간 생계형 100% 감면	* 이처럼 100%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경우 최저한 세를 배제한다(租特法 132 ① (4), ② (4)).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 업중소기업	50% * 5년간 생계형 50% 감면	_

#### (6) 고용증대에 따른 추가 세액감면

앞의 (3)과 (4)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u>수도권과밀억</u> 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

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앞의 (3)과 (4)의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3)과 (4)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u>다만, (5)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고용증대에 따른 추가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租特法 6 ⑦).</u>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추가 세액감면\* =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감면율[MIN(①, ②)] \* 추가 감면받은 부분은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租特法 132 ① (4), ② (4)).

- ① 비율\*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text{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50\%$ 
  - \*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한도율 = 50%[(4)에 따라 75%에 세액을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25%]

여기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란 다음의 업종 구분에 따른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말한다 (租特令 5 ⑬).

- ①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 ② 그 밖의 업종의 경우:5명

#### 참고사항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 1.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租特令 5 億, 23 ⑩).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② 근로기준법(제2조 ① (8))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①)」에서 정하는 임원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 ⑥ 근로소득원천징수부(所令 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 ⑤ 「국민연금법(제3조 ① (11),(12))」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 ①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1 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시간근로자 중 상시근로자로 보는 자를 말한다)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아래 ②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租特令 5 億, 23 ⑪,②).

#### ①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위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100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租特令 23 ⑫).

#### ② 지원요건

-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보다 감소하 지 않았을 것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3))」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②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20%) 이상 일 것 ■

#### 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청년의 범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 청년의 범위 확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연령이 15세 이상 <u>34세</u> 이하인 사람
○ 적용기한 : 청년이 2018.12.31.까지 중소기	○ 적용기한 연장 : 청년이 <u>2021.12.31.</u> 까지
업체에 취업할 것	중소기업체에 취업할 것
○ 감면대상소득 : 취업일부터 받는 근로소득	○ 감면기간 연장 : 취업일부터 받는 근로소득
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	으로서 취업일부터 <u>5년</u> 이 되는 날이 속하
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감면세액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 감면비율 인상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70%(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의 <u>90%</u>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개정취지】청년의 중소기업체 취업 장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청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이 영 시행 전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도 취업일 당시 개정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②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적용례: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 세액감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租特法 30 ①).

세액감면 = MIN (①, ②)

- ①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70%(청년은 90%)
- ② 한도액: 과세기간별로 150만원
  -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租特法 30① 후단).

#### (2) 청년 및 중소기업체

- 1)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u>34세</u>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租特令 27 ①).
- 2) '중소기업체' 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제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일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租特法 30 ①, 租特令 27 ③).

#### 참고사항 청년에서 제외하는 사람

청년 가운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租特令 27 ②).

- ①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하는 임원
-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 ④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 국민연금 부담금,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

#### 참고사항 사후관리

- 1.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租特法 30 ③).
- 2.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租特法 30 ④).
- 3.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租特法 30 ⑤).
- 4. 퇴직한 사실이 통지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감면을 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租特法 30 ⑥). ■

# Ⅱ. 그 밖의 수정사항

## 1 세법학 I

Р	행	종전의 내용	고 침
12	上 13	2개월*	<u>3</u> 개월*
	上 14	7/21	<u>8</u> /21
147	上 6	해당 결정 또는 판결에 경정결정	해당 결정 또는 판결에 <u>따라</u> 경정결정
150	上 9	본문 4)의 거래 등이	본문 <u>5)</u> 의 거래 등이
156	上 10	2%의	<u> 3%</u> 의
	上 12	2%의	<u>3%</u> 의
	上 14	2%(가공발급) 2%(가공수취) 1,600만원	<u>3%</u> (가공발급) <u>3%</u> (가공수취) <u>2,400</u> 만원
372	下 2	중복조사에 않는다는 사례	중복조사에 <u>해당하지</u> 않는다는 사례
777	下 13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894	下 3	아니한 경우에도 <u>유사한 소득은</u>	아니한 경우에도
1240	下 9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1311	上 2	3년 이내에	<u>5년</u> 이내에
1388	下 12	신고기한(20×2.10.31.)이	신고기한(20×2. <u>4.30.</u> )이
1413	上 2	1) 증여 <u>추정</u> 요건	1) 증여 요건
1509	下 4	상속세 과세가액에	<u>증여세</u> 과세가액에

## 2 세법학Ⅱ

Р	행	종전의 내용	고 침
222	下 6	공급가액에 1%를	공급가액에 <u>0.5%</u> 를
303	下 7	영세율 첨부를	영세율 <u>서류를</u>
305	上 14	아래 (4)의 납부유예	아래 <u>(5)</u> 의 납부유예
317	上 4	입력하는 방식으로 <u>방법으로</u>	입력하는 방식으로
450	下 18	【물음 4】… 독일 자동차박람회	【물음 4】… <u>판매장</u>
545	上 10	무효가	무효가 <u>됨에 따라</u>
570	上 13	초과하는	초과하는 <u>경우</u>
698	下 4	2017년도	<u>2018</u> 년도
738	上 10	<2017년> <2018년>	< <u>2018</u> 년 > < <u>2019</u> 년>
764	上 13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u>일반연구·인력</u> 개발비
783	下 7	2022년	<u>2023</u> 년
787	上 15	체납일* 현재 중	체납일* 현재 <u>다음</u> 중
847	下 6	장부가액 승계	<u>시가</u> 승계
887	上 9	2017년	2020년